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1. 법제5조제3항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”의 정의(안 제4조제2항 신설)

#### 가. 개정 이유

- 개정 소공인법(제5조제3항)은 도시형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
-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

#### 나. 개정 내용

-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하위 규정으로 위임이 가능함에 따라
- 사업의 명칭 변경, 사업별 사업기간 및 세부추진 내용, 계산 착오, 오기,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도록 규정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법에서 위임한 경미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 2. 법제5조제4항 “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” 으로 정의(안 제4조제3항 신설)

### 가. 개정 이유

- 개정 소상공인법(제5조제4항)은 도시형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

### 나. 개정 내용

-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
- 종합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3. 법제6조제4항 “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”으로 정의(안 제5조제2항 신설)

가. 개정 이유

- 개정 소공인법(제6조제4항)은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

나. 개정 내용

- 사업의 개요,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, 그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 포함하도록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법률의 일관성을 유지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